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교정학개론 해설

노신우(cafe.naver.com/NohSsam 범죄와 형벌)

문 1.

정답 ①

해설 뒤르켐은, 범죄를 모든 사회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았고(범죄정상설, 첫 번째 지문),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져 사회구성원들이 지향적인 삶의 기준을 상실한 무규범 상태로서 사회통합의 결여를 아노미(Anomie)라고 규정하였다(두 번째 지문). 머튼(R. Merton)은 뒤르켐의 아노미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목표와 합법적인 수단 간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아노미이론, 세 번째 지문).

문 2.

정답 ④

해설 교정장비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로 구분된다(규칙 제157조).

ㄱ. (X) 포승은 교정장비 중 '보호장비'에 해당한다(규칙 제169조 제8호 참조).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ㄴ. (O) 규칙 제186조 제1호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충격기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ㄷ. (X) 전자경보기는 교정장비 중 '전자장비'에 해당한다(규칙 제160조 제3호 참조).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시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온도·소리·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정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 (○) 규칙 제186조 제6호

문 3.

정답 ①

해설 ① (○) 영 제92조

② (×) 고지'하여야 한다'(영 제91조 제1항).

③ (×)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법 제71조 단서).

④ (×)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영 제91조 제2항).

문 4.

정답 ③

해설 ① (○) 규칙 제198조 제3호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

② (○) 규칙 제200조

③ (×)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규칙 제199조 제2항).

제199조(지정 및 해제)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④ (○) 규칙 제201조

문 5.

정답 ①

해설 ① (×) '접견중지사유'에 해당한다(법 제42조 제4호).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 법 제41조 제4항 제3호

제41조(접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 법 제41조 제4항 제1호

④ (○) 법 제41조 제4항 제2호

문 6.

정답 ①

해설 ① (X) 출산의 개념에 '유산·사산을 포함'한다(법 제52조 제1항).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 규칙 제51조 제2항

③ (○) 규칙 제57조 제1항

④ (○) 규칙 제43조 제2항

문 7.

정답 ③

해설 ㄱ.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1조(일시 차입 등) ①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 (X)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 (X)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동법 제11조의2).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ㄹ. (○) 동법 제7조, 제8조 제1항

제7조(교도작업제품의 민간판매)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문 8.

정답 ②

해설 ①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5조(회계의 구분)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작업 수입)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X)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제14조(재산) ② 교정법인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도·증여 또는 교환
2. 용도 변경
3. 담보 제공
4.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③ (○) 동법 제31조 제1항
④ (○) 동법 제36조 제1항

문 9.

정답 ④

해설 ① (X)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호).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②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심신장애자, 정신성적 장애자) : 15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독된 자) : 2년

② (X)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X)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동법 제18조).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④ (○) 동법 제27조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문 10.

정답 ③

해설 ㄱ. (○) 「소년법」 제33조 제2항

ㄴ. (○) 동법 제33조 제3항

ㄷ. (X)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ㄹ. (X)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33조 제5항).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ㅁ. (○) 동법 제33조 제6항

문 11.

정답 ②

해설 ① (○)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② (X)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법 제117조 제1항).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③ (○) 법 제117조 제2항 단서

④ (○) 법 제118조

문 12.

정답 ④

해설 ① (○) 다이버전이란 일반적으로 공식적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 다이버전은 기존의 형사사법체계가 낙인효과로 인하여 범죄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범죄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된다.

③ (○) 다이버전은 그 주체에 따라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 법원 단계의 다이버전, 교정 단계의 다이버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에 해당한다.

문 13.

정답 ①

해설 ① (×)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밖의 관련자 및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재통합을 추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가해자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므로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 14.

정답 ②

해설 ① (×) 오번 제도는 엄정독거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혼거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야간에는 독거구금하고 주간에는 침묵상태에서 혼거작업을 실시하는 구금방식이다(완화독거제).

② (○) '보스탈 제도'는 범죄소년을 구금하여 직업훈련, 학과교육, 개방처우, 수용자 간의 토의 등을 중시하여 시행한 소년교정시설의 선구적 모델로서, 1897년 영국의 브라이스(R. Brise)가 16~21세의 범죄소년을 켄트 지방의 보스탈교도소에 수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③ (×) 카티지 제도는 대규모 시설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수형자 처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용인원을 소집단화하여 가족적인 처우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 펜실베이니아 제도는 절대침묵과 정숙을 유지하며 주야간 구분 없이 엄정한 독거수용을 통해 회오·반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금방식이다(엄정독거제).

문 15.

정답 ④

해설 ① (○) 법 제79조, 제80조

② (○) 법 제86조 제1항, 영 제103조 제2항

③ (○) 영 제104조, 제105조

④ (×)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81조, 영 제100조).

제81조(분리수용)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문 16.

정답 ④

해설 ① (○) 법 제63조 제2항·제3항

제63조(교육) ② 소장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
2.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

② (○) 법 제64조 제1항, 영 제88조

제88조(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 규칙 제106조 제1항

④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규칙 제110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110조(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이하 "학사고시반 교육"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교육대상자 준수 기본원칙) ②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 17.

정답 ①

해설 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4항 제3호).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문 18.

정답 ③

해설 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감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동법 제60조 제1항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X)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62조 제2항 제2호).

제62조(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④ (○) 동법 제63조 제2항

제63조(사회봉사·수감의 종료) ②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수감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수감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문 19.

정답 ④

해설 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동법 제6조 제2호

③ (○) 동법 제6조 제3호

④ (X)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는 '법원'의 권한이다(동법 제47조 제1항 참조).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문 20.

정답 ③

해설 ㄱ. (○) 낙인이론에서는 범죄란 일정한 행위속성의 결과가 아니고, 통제기관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다고 본다. 또한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제재를 공격·방어하기 위한 동기에서 발생하거나, 일탈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스스로를 일탈자로 자아규정하게 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한다고 본다.

- ㄴ. (○) 낙인이론에서는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사회구성원의 반응(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낙인)과 사법기관의 공식반응(공식적 통제기관의 처벌)으로 나누기도 한다.
- ㄷ. (×) 낙인이론에서는 범죄행동(일차적 일탈)에 대한 통제기관의 반응(처벌)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이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된다고 본다. 범죄행동은 보상에 의해 강화되고 부정적 반응이나 처벌에 의해 중단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이다.
- ㄹ. (○)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적 목표는 비범죄화, 비형벌화, 전환(다이버전), 비시설처우(탈시설화) 등이다(4D정책).